

과학 기술 처

총무 200-2547 (95-7408)

1971. 3. 19

수신 총무처 장관

참조 임용제도 담당관

제목 휴직자의 복직발령 원자에 관한 질의

3. 질 의

(1) 제대원자를 기준으로 복직 명령하여야 할 것인가?

(2)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인가?

그리고 복직원 제출원자를 기준으로 복직발령하여야 할 것인가?

(3) 복직발령의 경우 제대사실만 입증하면 되는가? 또는 제대하여 병무청에 신고한 후 제대하였다는

총무 200-2547

1971. 3. 19.

병적확인서가 있어야 하는가? 따라서 휴직기간은 제대
일자 까지인가? 또는 제대명령을 받은 이후 병무청에
신고하여 정시제대차로서 입적이 될 때 까지 인가?

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 끝

과 학 기 술 처 장 관